

# 2018년 채용형인턴 채용공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는 직무능력(NCS)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하여 승강기 안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8년 10월 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1. 채용개요

###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채용 분야		인원	응시자격	근무예정지	
계		23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li> <li>-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li> <li>- 정규직 임용 후 승강기 검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li> <li>- 채용예정일(2018.12.10.)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li> <li>-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60세 이상 제외)</li> </ul>		
기술 분야 (채용형 인턴)	공개경쟁	일 반	150명	공단본부(진주) 및 전국 지역사무소	
	제한경쟁 (사회형평적 인력 등)	지역인재 <sup>1)</sup> (경남)	4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 기사에 응시 가능한 사람</li> <li>* Q-Net(<a href="http://www.q-net.or.kr">www.q-net.or.kr</a>)</li> <li>응시자격자가진단 참조</li> </ul>
		고 졸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li> <li>• 승강기 기사에 응시 가능한 사람</li> <li>* Q-Net(<a href="http://www.q-net.or.kr">www.q-net.or.kr</a>)</li> <li>응시자격자가진단 참조</li> </ul>
		장애인	1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li> <li>•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한 장애인</li> <li>• 국가유공자법<sup>2)</sup> 상 취업지원대상자</li> </ul>
		국가 유공자	10명		

1) 대학까지의 최종 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공단 본부 이전지역인 경남지역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부산, 울산, 대구, 경북지역 소재 학교는 비대상)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① 채용 예정분야 NCS기반 직무소개 : 【붙임 1】 참조
- ②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자격취득 여부, 교육성적,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인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임용
- ③ 최종합격자에 따라 채용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④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및 하향지원\* 불가
  - \* 하향지원 예시 : 고졸 초과 학력자의 고졸 응시, 승강기 기사 응시 가능자의 고졸 응시
- ⑤ 지역사무소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http://www.koelsa.or.kr))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지역사무소」 참조

## ■ 채용직급 : 인턴(채용형 인턴)

- 인턴 종료 시 전환기준 및 평가에 따라 정규직(6급 또는 7급) 전환
  - \*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자격취득 여부, 교육성적,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인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임용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의거 자격사항에 따라 6급 또는 7급으로 임용
- 정규직 전환 조건은 우리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 ■ 인턴 근무조건

- 근무지역 : 공단본부(경남 진주) 및 전국 지역사무소
- 보수조건 : 월급 175만원(중식비 및 포함, 40H/주 근무) 및 4대보험
- 근무기간 : 2018. 12. 10. ~ 2019. 6. 9.(6개월)
  - \* 정규직 미전환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고용관계 소멸

## 2.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3. 우대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2 참조)

구분	우대대상	대상전형 (필기전형)	우대사항 (만점 기준)	부여기준
법정	국가유공자	○	5% 또는 10%	관계법령에 의거 차등 부여, 가점이 높은 한가지만 부여
	장애인	○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2배 적용
한국사 자격증	전 분야	○	3%, 2%, 1%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급) 이상의 자격자 - 1급 3%, 2급 2%, 3급 1%

※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대 10%까지 적용, 필기전형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4. 전형절차

전형단계	주요내용	일 정
공고 및 접수	• 홈페이지, 알리오, 워크넷 등	'18. 10. 5(금) ~ 10. 22(월) 18:00 (예정)
서류전형	• 합격자 심의 및 결정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관련분야 응시자격을 충족한 사람</li> <li>*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li> <li>* 채용대행업체의 분류 결과를 토대로 기술 총괄처·인재경영부·감사실 직원이 검증</li> </ul> </div>	'18. 10. 25(목) (예정)
	• 합격자 발표	'18. 10. 26(금) (예정)
	• 이의신청 및 접수	'18. 10. 26(금) ~ 10. 29(월)
필기전형	• 필기시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평가) - 서울: 공개경쟁(일반) - 대전: 제한경쟁 - 전형기준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기시험의 점수가 60% 이상인 득점자 가운데, 채용예정 인원의 <b>2배수</b> 범위에서 상위 성적순으로 선발</li> <li>* 인성검사의 경우 '보통' 등급(신뢰도 부적합 제외) 이상인 사람 합격</li> </ul> </div>	'18. 11. 3(토) (예정)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18. 11. 7(수) (예정)
	• 이의신청 및 접수	'18. 11. 7(수) ~ 11. 8(목)
면접전형	• 경험면접 및 토론면접 - 면접장소 : 공단본부(경남 진주)	'18. 11. 14(수) ~ 11. 23(금) (예정)
최종합격자 확정 및 발표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18. 11. 28(수) (예정)
임 용	• 임용일	'18. 12. 10(월) (예정)

※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필기전형

### ○ 【1교시】 직무수행능력평가(승강기 검사)

구분	전공선택 ①	전공선택 ②	전공선택 ③
공개경쟁, 제한경쟁 (지역인재)	· 승강기 개론 및 기계설계 (30%) · 기계 공학(70%)	· 승강기 개론 및 전기설계 (30%) · 전기 공학(70%)	· 승강기 개론 및 기계·전기 설계(30%) · 기계공학(35%) · 전기공학(35%)
승강기 기사 수준 출제			
제한경쟁 (고졸,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제외	· 승강기 개론 및 안전관리 (30%) · 기계기초이론(70%)	· 승강기 개론 및 안전관리 (30%) · 전기기초이론(70%)	· 승강기 개론 및 안전관리(30%) · 기계기초이론(35%) · 전기기초이론(35%)
승강기 기능사 수준 출제			

### ○ 【2교시】 인성검사 <공통>

### ○ 【3교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공통>

- 평가요소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 ○ 합격자 결정

- 각 교시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 시 과락 처리

\* 단, 인성검사의 경우 '보통' 등급(신뢰도 부적합 제외) 이상인 사람 합격

- 직무수행능력평가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합산한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득점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전형 평가요소

구분	평가요소	비고
면접전형	· 직업관(직업윤리)                      · 고객지향성 및 협력성 · 전문성 및 업무수행능력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발전가능성	경험면접
	· 의사소통능력 · 전략적 사고 및 논리전개 능력	토론면접

## 5.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전형 시 서류전형, 필기전형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
- 면접전형 평점이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위로 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 \* 동점자의 경우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 최종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

##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①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서류전형 합격자 (인터넷 접수)	① 필기전형 본인확인용 서류(별도안내)
필기전형 합격자 (면접장 제출)	<제한경쟁 지원자 확인용 서류>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② 국가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③ 장애인 증명서 1부
최종 합격자 (우편 제출)	<공통 서류> ① 입사서류 각 1부(별도안내) ② 채용신체검사서 1부 <해당자 제출서류> ① 자격증 사본 1부 ②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 우편 주소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충무공동)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재경영부
- \*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경우 번역 공증 서류(원문, 한글 증명서, 공증 서류) 제출

## 8. 유의사항

- 제출완료 후에는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경력 및 경험사항, 자기소개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시기 바라며, 불성실 작성(공란, 동일내용 반복, 타사 지원내용, 항목별 100자 미만 등)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국문(입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영문 가능)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 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e-mail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자격증, 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입력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입력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전형 중이나 후에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각종 자격 해당여부 등이 지원서의 입력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및 입사취소 처리되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 사정을 하며, 각종 증빙서류는 '6.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에 제시된 대로 접수합니다.
- 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의 동시접속 등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반드시 접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이 되었어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 내<sup>1)</sup>에 반환 청구 시 반환을 하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이때, 채용서류의 반환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합니다.
- 채용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분야별·단계별로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우리 공단의 필요에 따라 공지하고 변경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일은 우리 공단의 인력운영계획 및 정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 일정 공지 등은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SMS로 개별통지됩니다.
-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재학 및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의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채용 담당자(☎055-751-09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붙임 1.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승강기 법정검사
2. 우대사항(상세).
3. 검사자 자격기준
4. 검사보조자 자격기준. 끝.

---

1) 반환 청구기간 : 채용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 승강기 법정검사】**

채용분야	기술	분류 체계	대분류	15. 기계
			중분류	05. 기계장치설치
			소분류	01. 기계장비설치·정비
			세분류	승강기 법정검사 (공단 자체개발)
공단 주요사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검사, 인증, 진단·컨설팅, 안전성 평가, 연구개발 등 안전관리 사업 및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핵심채무 (능력단위)	○ 승강기 법정검사(완성·정기·수시·정밀안전 검사) 실시			
직무수행내용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국가에서 정한 검사 기준,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 접수에 따른 일정 안내, 검사준비,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 항목별 주요 부품의 기능 및 안전성 테스트,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			
일반요건	연령	공고문 참조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승강기, 기계, 전기전자학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필요지식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검사기준의 이해, 검사 유형(완성, 정기, 수시, 정밀안전)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판정기준에 대한 이해, 승강기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등)에 대한 기계구조 이해, 승강기 설치 부품별 특성 및 성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 기계) 해석, 승강기 조작 매뉴얼, 승강기 이용자 준수 사항, 검사 측정장비 종류 및 사용 매뉴얼 등			
필요기술	○ (승강기 법정검사) 검사기준 해석 및 검사결과 판정 능력, 검사기록표 및 검사결과통보서 등 기술문서 작성 능력, 검사정보시스템(전산) 사용 능력, 기계실·승강로·승강장·피트 등 구조파악 및 검사능력, 승강기 설치도면(전기·기계) 해석 능력, 검사 측정 장비 사용 능력, 승강기 관리주체에 검사결과 설명 등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무수행태도	○ (승강기 법정검사) 승강기 검사기준 및 매뉴얼을 준수하는 태도, 공정한 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정확한 설명 및 업무처리 등), 안전수칙 준수로 검사수행 시 위험점(협착점, 끼임점, 물림점 등) 주의			
필요자격	○ (주요자격) 승강기 기사, 승강기 산업기사, 승강기 기능사 ○ (보조자격) 기계, 전기, 전자, 안전 관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참고사이트	○ <a href="http://www.ncs.go.kr">www.ncs.go.kr</a> 홈페이지 → NCS·학습모듈 검색			

# 우대사항

※ 가산점수는 필기전형에 한하여 적용(최대 10% 부여)

## □ 법정 가산

<1> 국가보훈 대상자(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우대 대상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 기재하시고 추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허위로 판명될 경우 득점 순위와 관계없이 합격 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 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 및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애국지사의 가족
    -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 장애등급 11급
  - 다. 삭제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 상이등급 6급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장애인(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점을 2배(10%)로 적용

[붙임 3] 검사자 자격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별표 7의3

구분	자 격 기 준
검사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b>승강기 기사</b>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하 “ <b>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b> ”이라 한다)이 <b>1년 이상인</b>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b>승강기 산업기사</b>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b>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b>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b>학사학위</b>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b>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b>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 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b>전문학사학위</b> 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b>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b> 사람

[붙임 4] 검사보조자 자격기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제1항제1호부터 제9호

구분	자 격 기 준
자체점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b>승강기 기사</b>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b>승강기 산업기사</b>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 <b>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b> ”이라 한다)이 <b>2개월 이상인</b>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b>승강기 기능사</b>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b>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b>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b>산업기사 이상의 자격</b>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b>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b>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또는 전자 분야 <b>기능사 자격</b> 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b>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b>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b>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 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b>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b>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b>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b> 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b>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b> 사람 8.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b>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b> 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b>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b> 사람 9. 승강기의 <b>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b> 사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해석 관련(승강기안전과-1371(2018.5.23.)>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은 승강기 관련 학위 또는 승강기 자격증 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